

의안번호	제866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박병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3월 4일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박병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6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3월 4일

발 의 자: 박병천 · 이정범 · 유상용
김성대 · 김정일 · 박봉순
박진희 의원

1. 개정이유

-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흡연 학생의 금연 실천성을 높여 건강한 성장 발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의 정의에 유치원 포함 개정(안 제2조제1호)
- 나. 흡연 및 금연 실태조사의 효율성,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가능토록 신설(안 제5조)
- 다.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및 물품 지원 신설(안 제6조제4항)
- 라. 흡연 학생 관리 사항 신설(안 제6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불임
- 나. 비용추계: 불임
- 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”를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이란 제1호의”를 “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학생의 흡연의 유해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”를 “학생이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른”으로, “있도록 하는”을 “있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”를 “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”으로, “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”을 “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하도록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흡연 예방”을 “흡연예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실태 조사”를 “실태조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촉진을 위해”를 “촉진에”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매년 1회 이상”을 “제4조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”로, “실시하여야 한다”를 “매년 실시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

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 및 관계 기관,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 중 “**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**”을 “**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학교장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증진과 협조를 위하여 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교육·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④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재원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흡연 학생 관리) ①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- ②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**제6조**”를 “**제7조**”로, “**위하여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4항**”을 “**위하여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4항제6호**”로, “**전체 등 학교 내 모든 지역이**”를 “**전체가**”로, “**하여야 한다**”를 “**설치하여야 한다**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**홈페이지, 소식지, 소셜미디어**”를 “**누리집, 소식지, 누리 소통 매체**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”를 “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”
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학교”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	1. -----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-----.
2. “학생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	2. -----이란 ----- -----.
3. “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”이란 학생의 흡연의 유해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·사회적 환경을 말한다.	3. ----- -- 학생이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른 ----- ----- 있는 ----- -----.
4. 5. (생략)	4. 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(생략)	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② -----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----- -----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하도록 ----- -----.

제4조(계획 수립 등) ① (생 략)

② 학생건강증진계획에는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
4. 학생 흡연 관련 실태 조사 및 결과

5.·6. (생 략)

7. 그 밖에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③ (생 략)

제5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6조(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) ① (생 략)

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이 모든 학생을

제4조(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흡연예 방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실태조사 ---
--

5.·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----- 촉진에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실태조사) ① --- 제4조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-----
----- 매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 및 관계 기관, 민간 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-----

대상으로 실시되고, 관련 교과
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
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
여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역량
강화와 학부모의 학생 흡연예방
및 금연 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
과 협조를 위하여 담당 교직원
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
생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교육
·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8조(금연구역 표시) ① 교육감
은 제6조에 따른 간접흡연 예방
을 위하여 「국민건강증진법」
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

-----.

③ 학교장은 교직원의 역량강화
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
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증진과
협조를 위하여 담당 교직원 및
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흡연예
방 및 금연 관련 교육·연수를
실시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
및 금연을 위한 재원 또는 물품
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
있다.

제6조의2(흡연 학생 관리) ① 학
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
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
에는 학생이 금연 상담을 받을
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 주변
및 통학로에서 흡연하지 않도록
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.

제8조(금연구역 표시) ① -----
-- 제7조-----
-- 위하여 「국민건강증진법」
제9조제4항제6호----- 전

체 등 학교 내 모든 지역이 금
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
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9조(홍보) 교육감은 학생의 흡
연예방 및 금연을 촉진하기 위
하여 홈페이지, 소식지, 소셜미
디어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
체계를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
등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
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
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
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
성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관
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
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
다.

체가 -----
----- 설치
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홍보) -----

--- 누리집, 소식지, 누리 소통
매체 -----

-----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

----- 등과 협력체계
를 구축하도록 -----
--.

관 계 법 령

□ 학교보건법

제9조(학생의 보건관리)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, 질병의 치료와 예방, 음주·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(誤用)·남용(濫用)의 예방, 성교육,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,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(약칭:교육환경법)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(이하 “학교경계등”이라 한다)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1. 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(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
2. 상대보호구역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
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·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설정·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1.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(移轉)하게 된 때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2.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
3.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

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삭제 <2011. 6. 7.>

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·방법 등은 보건

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6. 「유아교육법」·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[교사(校舍)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]
9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10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른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 문화의집, 청소년특화시설, 청소년야영장, 유스호스텔,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
11.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도서관
12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1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
16.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,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7.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
20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
2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6조(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), 제6조2(흡연 학생 관리)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

3. 미첨부 사유

-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6조(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), 제6조2(흡연 학생 관리)에 따른 비용은 충북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충북교육청 재정 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: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